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 6. 21 규정 제19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임·직원으로서 직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사장”이란 공단 업무의 전반을 대표하며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공단에 대하여 이사장이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공단의 방문객 및 출입자, 하도급 업체의 전 사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조치)** ① 근로자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원칙을 우선으로 하며, 이사장은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한다.

1. 법과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할 것
3. 공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근로자는 법과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사장 또는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법령, 규정, 요지 게시 등)** 이사장은 법과 규칙의 요지 및 본 규정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지휘·총괄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의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서 별 업무분장에 관련된 기본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④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5. 산업보건의(필요시 위탁)
6. 자체소방대(소방안전관리자)
7. 기타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직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이사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속 사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5. 소속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정기·신규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실시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별표 2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공단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

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별표 3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공단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치료, 응급조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7.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보건의)** 이사장은 보건관리자를 의사가 아닌 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의사” 자격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다음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 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5인(근로자대표 포함)으로 구성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2. 경영관리부장
3. 기획감사팀장
4. 안전관리자 1인(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대행기관의 담당자)
5. 보건관리자 1인(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대행기관의 담당자)
6. 기타 이사장이 지명(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중요 심의·의결하는 사항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관련되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⑧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위원장은 게시판에 게시, 인트라넷 공지, 자체 정례조회, 집합교육 등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제15조(작업지휘자)**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사업장의 지형,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작업
3.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취급 작업
4. 밀폐 공간 작업

**제16조(기타조직)**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 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사장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정기교육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매월 또는 연간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사장은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이사장은 다음 각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시간 및 내용)** ① 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 및 대상별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과 공단 실정에 맞게 자체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영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사업장에 통보하고 게시 또는 공람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 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활동 실적
2. 당해연도 활동 계획
3.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시설·예산 등

**제24조(안전보건진단)** 이사장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받았을 경우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5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① 이사장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정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평가)** ① 이사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⑦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도급·발주 시 계약 조건에 위험성 평가 점검 항목을 명시하고 부실 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

⑨ 이외의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안전수칙제정 및 준수)**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작업부서의 안전수칙과 일반안전수칙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며, 각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작업 장소, 유해·위험 기계·기구, 근로상태, 작업환경, 안전표시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자체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④ 안전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⑤ 안전관리자는 안전순찰 시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설비에 주의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주기적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계획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담당부서는 현장 근로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미준수 근로자를 퇴거 조치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소관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금지)**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무자격 직원에게 당해 업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 각 호가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험사업장 2인 1조 근무
2. 신입근로자(6개월 미만) 단독 작업 제한
3.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4. 산재 위험 노출 근로자 대상 심리치료 운영
5. 근로자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③ 근로자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 설비의 이상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때

**제31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고압가스저장소 및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다음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자격, 면허 또는 교육이수자가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업무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설비 등을 취급하는 업무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
4. 「증기관리법」에 의한 증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
5.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업무
6.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업무
7. 정전 및 활선 업무

② 다음 업무는 3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를 취업 시켜야 한다.

1. 운전 중인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 주유 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업무
2.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업무

**제33조(작업중지)**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으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이사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 ① 이사장은 공단 각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부착장소, 색채 등은 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부착)한 안전보건표지는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도급사업시의 안전 · 보건조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장 보건관리

**제37조(작업환경측정)** ① 이사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참여시켜야 한다.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직원을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 및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정례조회 또는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이사장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 분석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료 분석을 위탁 받은 지정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⑨ 이사장은 사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1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38조(건강진단)** ① 이사장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매년 실시한다. 단, 유해인자에 노출, 직업병 유소견자 등 공단에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 주기를 단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유해물의 취급절차)** 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작업지휘자로서 유해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유해물 취급자로 지정하고 취급자에게 취급절차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 취급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과 작업지휘를 받는다.

**제40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관방법)**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 긴급 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보호구, 작업복)** ① 근로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허용 기준치 이

상 발생 공정 및 유해 위험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소음(85dB 이상)발생 공정 및 작업 시 : 귀마개 등
2. 폐 파우더 청소 등 분진 과다 발생 공정 및 작업 시 :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 등
3. 용접 작업 시 : 보안경 및 보호 장갑, 보호의 등
4. 고소 작업 시 : 안전대 및 고소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등
5. 기타 작업 시 : 해당 작업에 관련된 보호구 착용

② 보호구를 구입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검정대상이 아니거나 검정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
2. 해당 유해 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3.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4. 방사선에 피폭된 자

**제44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이사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사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⑥ 이사장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이사장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⑨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보건수칙)** ① 사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취급 기준 등의 보건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시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연락망)** 이사장은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담당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지휘계통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즉시 통보하고 재해발생현장을 원상태로 보존하며 이사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를 제외한 야간, 공휴일 및 휴일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당직근무자는 익일 조치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

⑥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0조(동종재해 재발 방지조치)** 재해발생부서는 향후 동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이사장은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재해 분석 결과를 각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52조(보고지연 및 허위보고)** 재해보고를 고의로 지연시켜 안전관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보고 및 증언 경위 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

있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관련자 전원을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조치토록 한다.

## 제7장 보칙

**제53조(무재해 운동)** ①이사장의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되 이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재해달성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기술 개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신제품을 이용 확대 한다

**제55조(포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우수한 부서 또는 사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
3. 안전관련 대외 포상자.
4. 기타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6조(징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수칙, 기준 등을 위반하여 재해를 유발시킨 직원 및 감독자.
2. 이 규정 및 제반 안전관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57조와 관련하여 3회 이상 경고 누적 대상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 무단 불참자.

4. 재해 보고를 지연시켜 사고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보고 및 증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및 관련자.

5. 기타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

**제57조(경고)** 이사장은 관리감독자가 법령, 수칙, 기준 등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경미한 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재해발생의 현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경고 조치하여야 하며 경고 누적 대상자는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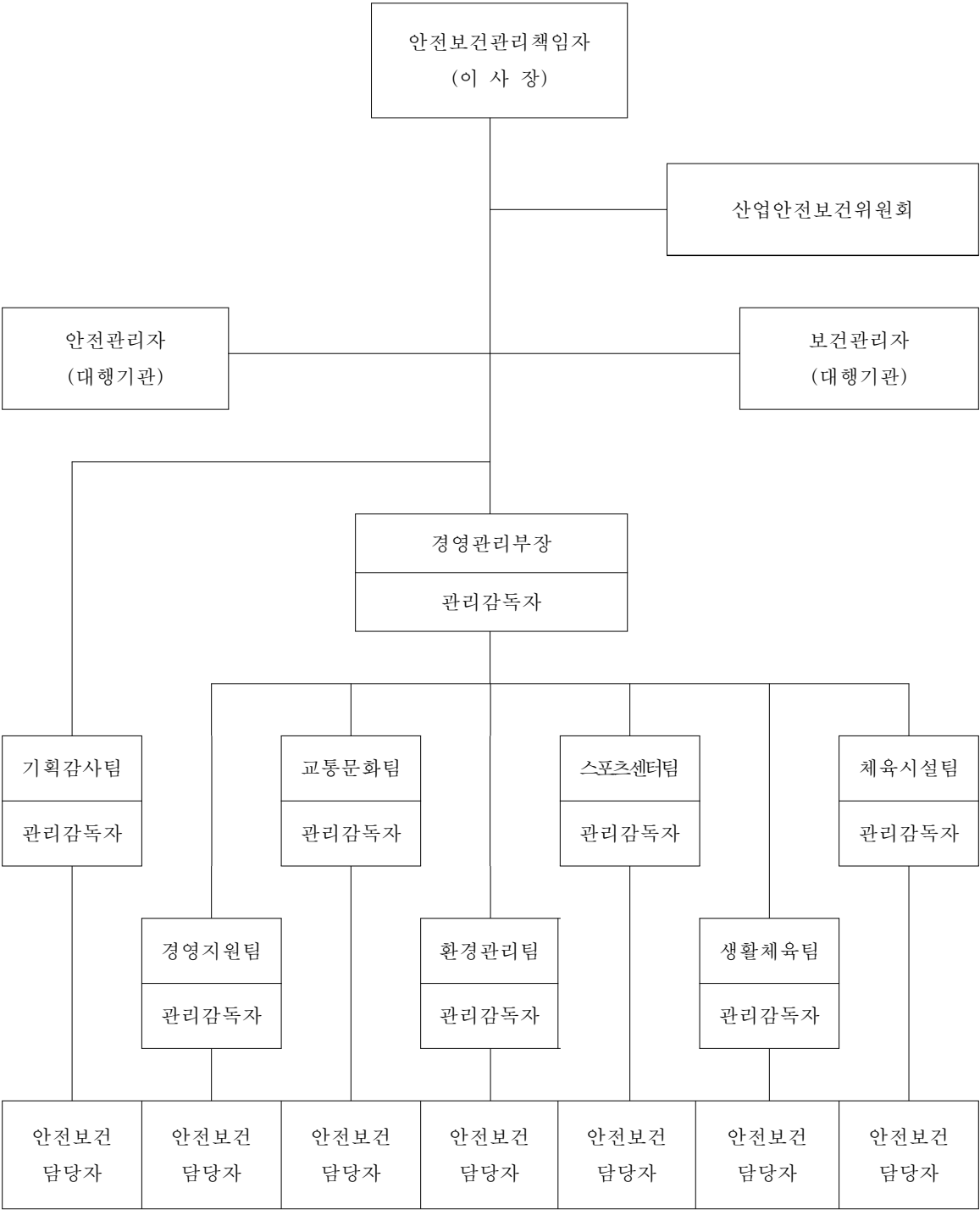
**제58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제7조관련)



[별표 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0조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별표 3]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1조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4]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1조관련)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 2시간 이상                                                                                           |
|                   |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br>-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4시간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 24시간 이상 |

3. 검사원 양성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양성교육 | -    | 28시간 이상 |